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 137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 시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 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2010.4월)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1조의 목적조항의 약칭 사용금지 및 인 용법령에 관한 낱표표시 등 전반적으로 정비함.(안제1조, 제2조 등)

나.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시설”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동 부지내에”를 “같은 부지에”로 하고,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을 “변경·보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년1회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를 “보건복지부지침에”로 하고, “정원범위내에서”를 “정원 범위에서”로 하며, “직원에 대하여는”을 “직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중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 ----- ----- <u>인천광역시</u> <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u>시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u>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u>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u>
② <u>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u>	② <u>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u>
③ <u>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u>	③ <u>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u>
1. <u>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u>	
2. <u>재정적 부담능력</u>	
3. <u>책임능력, 공신력</u>	
4. <u>위탁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위탁관리 실적등</u>	

현행	개정안
④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시행을 년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같은 부지에 ----- ----- -- 변경·보강할 때에는 ----- ----- ----- ----- ⑤ ----- -- 따른 ----- ----- 제9조(지도감독) ① ----- ----- ----- 연1회 이상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u>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u>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구 및 인력) ----- ----- <u>보건복지부지침에</u> ----- <u>정원 범위에서</u> ----- ----- <u>직원</u> <u>에게는</u> ----- 제13조(자체운영) ----- ----- <u>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u> 제14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04-29>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군간의 균형분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07.10.8>

제10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